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검토보고서



2021. 1.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1. 27.

경제도시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김기열 의원 등 8명(김기열, 박종길, 이영빈, 박정환, 조복희, 김귀화, 서민우, 박재형)
- 발의일자: 2021. 1. 13.
- 회부일자: 2021. 1. 15.
- 검토기간: 2021. 1. 15. ~ 1. 22.(8일간)

2. 제정이유

- 우리 구 공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이 물놀이 시설 이용 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제3조)
-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안 제4조)
- 시설이용 등의 제한(안 제5조)
- 물놀이장의 관리(안 제6조)
- 보험 가입 및 시설의 위탁운영(안 제7조~제8조)

4.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및 조례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1. 1. 13. ~ 2021. 1. 23.)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공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강창공원 등 3개소에 물놀이 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7월에도 선돌마당공원에 물놀이장이 개장될 예정이므로 본 조례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장 시설물 설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물 관리는 「물환경보전법」으로 각각 근거하고 있으며, 물놀이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인 운영 기간과 시간, 안전운영을 위한 이용자 통제 근거, 위탁 필요시 위탁운영의 근거 등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려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 · 아동 · 심신장애인 ·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차. (생 략)

카. 도립공원 · 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 ·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 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3.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 관리 기준)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치 · 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2.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 · 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라.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③ (생 략)

- ④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4. (생략)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의 견 서

1. 발의연월일: 2021. 1. 13.

2. 발 의 자: 김기열 의원 등 8명

3. 제안이유

- 우리 구 공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이 물놀이 시설 이용 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제3조)
- 나.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안 제4조)
- 다. 시설이용 등의 제한(안 제5조)
- 라. 물놀이장의 관리(안 제6조)
- 마. 보험 가입 및 시설의 위탁운영(안 제7조~제8조)

5. 참고사항[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

6. 검토의견

- 우리 구 내 물놀이장과 이용객의 수 증가에 따라,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개정안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제1항제1호는 매년 상황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하절기 중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고 같은 항 제4호는 위탁이나 임대 운영할 경우에도 물놀이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구민들이 손쉽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7. 수정내용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 ①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 ①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11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1.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매년 하절기 중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매년 상황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4.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탁이나 임대 운영할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위탁이나 임대를 할 경우에도, 물놀이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구민들이 손쉽게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